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제 안 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위탁 대상기관을 법률에 특정하지 않고,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해 위탁업무 수행 민간인에 대해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조항을 추가함(안 제33조제2항, 안 제34조 신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3조제2항 중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 등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를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로 한다.

안 제34조를 제35조로 하고,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설>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부 장관 또는 시·도사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 등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부 장관 또는 시·도사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 -----. ③ (개정안과 같음)

제33조(벌칙)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지원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34조(벌칙)</u> (현행 제33조와 같음)	<u>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u>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u>제35조(벌칙)</u> (현행 제33조와 같음)
--	---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28
----------	-------

발의연월일 : 2025. 12. 4.

발 의 자 : 김정호 · 김남희 · 이연희
이수진 · 서왕진 · 박해철
박 정 · 허종식 · 윤후덕
임미애 · 전진숙 · 안태준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촉진을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과 산업기반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업무의 일부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위임·위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무 운영의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테크노파크) 등 지역 기반 기관의 전문역량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위임·위탁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혁신 관련 업무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 신설).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가. 위탁 대상기관을 법률에 특정하지 않고,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해 위탁업무 수행 민간인에 대한 별칙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조항을 추가함(안 제33조제2항, 안 제34조 신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를 제35조로 하고, 제5장에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u> <u>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u>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u>

<u>제33조</u> (벌칙) (생략)	<u>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 <u>제35조</u> (벌칙) (현행 제35조와 같음)
-----------------------	---